

광주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단5404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D} 사이에 체결된 2018. 8. 1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9. 8. E(주)로부터 1천만 원을 변제기 2019. 10. 25., 대출이자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C이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E(주)는 C에 대한 채권을 F(주)로, 이후 F(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30850호로 위 양수금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2. 9. ‘C은 원고에게 17,986,146원 및 그중 9,262,995원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9.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B, H, I, J, K, C, L가 있었고, C의 상속지분은 1/7이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8. 1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등 총 51,345,995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C과 형제관계라 하더라도 왕래가 없어 C의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을 뿐, C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1/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별지